

『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4월 1일

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「농지법」이 개정(2009.5.27.공포, 2009.11.28시행)됨에 따라
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「농지법」 제44조가 삭제되어
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지법」 제44조 ~ 제4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2009. 5. 27 법률 제9721호로 「농지법」이 일부개정 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인 「농지법」 제44조가 삭제되어 2009. 11. 28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
- 「농지법」 제44조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, 제45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), 제46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), 제47조(경비 보조), 제48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가 삭제됨에 따라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